

의안번호	2218273
의 퇴 인	이재관 의원
회 답 일	2026. 6. 15.
추계번호	26A2124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1조제5항 신설 (기금의 투자 등)	○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71조제5항 신설 (기금의 투자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1조제4항 각 호¹⁾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-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경우,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
 -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출자에 따른 지출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대한 출자 여부, 출자 규모 및 출자 재원 등을 가정하

1)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여야 하나,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정책적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는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시도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2025년 시도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시도별	조성액	시도별	조성액
서울	1,078,130	경기	1,033,272
부산	160,136	강원	149,263
대구	-	충북	144,396
인천	79,258	충남	81,291
광주	-	전북	257,561
대전	65,794	전남	344,065
울산	72,693	경북	438,543
세종	3,301	경남	60,133
		제주	81,394
		전국 합계	4,049,230

자료: 행정안전부,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개요

-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손희정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손희정	02-6788-3750	hjson87@assembly.go.kr